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177					월일 : 2 자 : 9		. 5. 18 시 장	3
□ 제인	<u> -</u> 이유								
○ 채	민권익위원회 정 및 운행에 거 법령 폐지	대한 지원	기준의 불	·	•		•	- ,	ス
□ 주요	L내용								
\(\sigma\)	법령 용어 정비 내정 및 운행 : 근거 법령 폐지	시원 기준 명		, .		제6조)			
□ 개정	J조례안 :	【붙임 1】							
□ 신:-	구조문대비 표	E : 【붙임	2]						
	비법령발췌서 환경친화적 자 개기환경보전법 개기관리권역의 자동차 등록번:	동차의 개발 대기환경 기	- 및 보급 촉 내선에 관한	특별법	한 법	물			
□ 예신	<u> </u>	해당없음							
]예고(결과)]법예고 : 2(• - ••	•	3. 23	. (2	1일간)		
_ ·	ት 참고사항 년행조례 : 상침결정문 :	•							

[붙임 1]

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전기자동차"란"을 "전기자동차 등"이란"으로, "제2조제3호에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"을 "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 중 "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"를 "등에"로 한다.

제6조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등의"를 "법 제11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11항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 실·과	환경정책과		
o]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최 미 연		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미세먼지정책팀장 안 준 식		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건 영 (행정 2894)	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			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				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			
1. <u>"전기자동차" 란</u> 「환경친화적 자	1. <u>"전기자동차 등"이란</u> 「환경친화				
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	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				
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<u>제2</u>	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				
조제3호에 따른 전기 공급원으로부	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회				
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	<u>적</u> 자동차를 말한다.				
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					
말한다.					
2. "연료전지자동차"란 수소를 사	<u>〈삭 제〉</u>				
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					
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					
다(제1호의 전기자동차와 제2호의					
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하여 이하					
"전기자동차 등"이라 한다).					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				
4. "주차단위구획"이란 · 주차장법	<u>〈삭 제〉</u>				
·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					
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					
<u>말한다.</u>					
제5조(재정 지원) 시장은 법 제10조 및	제5조(재정 지원)				
제1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					
자동차 등의 판매가격 일부와 충전시	도세				
설 설치 관련 비용 등 시장이 필요하	등에				
<u>다고 인정하는 사업에</u> 대해 예산의 범					
이에서 기의하 스 이니	•				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시장은 <u>「수도</u>
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
2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
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「자동차 등록
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」제1조
의3제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
부착한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
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운행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
11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
제11항에 따른
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〈삭 제〉</u>